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57
----------	---------

발의일자 : 2005년 10월 12일
발 의 자 : 이현영 의원 외 7인

1.개정이유

정부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뿐 아니라 먹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일변도의 정책으로 야생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농민의 농업생산활동 시 인명피해 발생이 증가되어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사항의 보완과 결실기의 농작물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작물 피해보상도 할 수 있게 전부개정코자 함.

2.주요내용

- 조례안을 총칙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인명 피해보상으로 구분하여 3장 17개조로 하였으며,
- 목적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에서 야생동물에 조수류를 추가하였고, 농작물, 농작물 피해, 피해 농업인 등을 규정 하였음 (안 제2조).
- 농작물 피해보상의 보상요건으로 피해면적 100평(실경작 면적 기준), 피해금액 30만 원 이상으로 본인이 신고한 경우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 피해신고를 읍·면장에게 하고 조사는 관계공무원이 마을이장 및 신고인 입회 하에 실시토록 규정함 (안 제4조).
- 보상금지급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안 제5조).
-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출하가격의 70%를 기준으로 함(안 제6조).

- 보상금 지급절차는 현장조사 후 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후 청구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함 (안 제7조).
- 법령상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 경작 및 농외소득이 60% 이상 일 경우 보상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안 제8조).
- 인명피해에 대한신고는 14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관계공무원이 조사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수를 9명 이내로 조정하고, 군의원, 농업인 등이 참여할수 있도록 확대하였음 (안 제14조).
-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포유류, 야생조수, 독사류 등을 말한다.
- 2.“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을 말한다.
- 3.“농작물 피해”라 함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피해보상기준 또는 경상남도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지침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말한다.
- 4.“피해 농업인”이라 함은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자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을 말한다.
- 5.“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정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한다.
- 6.“농업생산활동”이라 함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농작물 피해보상

제3조(보상요건) 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다음 각 호의 규모 이상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 1.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2.총 피해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②농작물의 피해지역 면적은 실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신고인 입회 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피해 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기준) ①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한 지급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100분의70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군수는 현장조사 후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결정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건을 1개월 단위로 일괄 상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서에 의거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70세 이상 노인
4. 기타 영세농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보상 제외)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2. 농외소득이 피해 농가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제3장 인명 피해보상

제9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거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이 농업인의 생산활동 종사 중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도 지원 할수 있다.

제10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피해마을 이장과 농가 임회하에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①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대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을 말한다.

②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③지원금의 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부상 시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사망시에는 노동력 등을 감안하여 1000만 원 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1.피해액이 5만 원 미만
- 2.임산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 3.직접적인 농업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제4장 위 원 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농작물 피해보상 및 인명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2.인명피해 지원액 산정 및 지급결정과 관련된 사항
- 3.기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산림환경과장. 보건소장

2. 거창군의회 의원

3.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및
농업 단체의 장

③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위원장이 주재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